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고 제2026-287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 공무직근로자(학예분야 연구원 라급) 채용 공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공개모집하오니,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11월 20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전형	인원	담당업무(분야)	근무 예정지
공무직근로자 (연구원 라급)	1인	ㅇ 교내 박물관 전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소장품 및 수장고 관리 ㅇ 대학박물관 개관을 위한 전시기획 및 실무 지원 ㅇ 박물관 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ㅇ 기타 학예업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 (충남 부여군 소재)

※ 근로형태 및 시간, 급여 등은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채용분야 및 직종	계약기간	근무시간 및 형태
연구원 라급 (공무직)	계약체결일 ~ 정년(공무직)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평가를 거쳐 공무직 전환 여부 결정 ㅇ 실무수습 평가 시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 업무능력 부족 또는 직무수행능력의 불량 등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습기간 적격성 심사 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ㅇ 수습과 관련하여서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5조(수습제도)를 따름	09:00~18:00 (주5일, 주40시간)

※ 기관 사정상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와 협의 하에 근로시간(업무시작시간, 업무종료시간) 조정 및 **연장・야간・휴일근무가 발생할 수 있음.**

ㅇ 보 수 : 월 2,437,150원(세전)
- 기 본 급 : 2,277,150원(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임금책정 기준)
- 식 대 : 160,000원

※ 상기 보수표는 1호봉 기준으로, **국가유산청 근무 및 군 경력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2026년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임금책정기준」에 따른 것이며 2027년 임금인상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나.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 명절휴가비(연 2회, 설・추석 각 기본급의 60% 지급)

※ 기타 복리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통 자격요건(공고일 기준)

ㅇ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 등) 미해당자

ㅇ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공정채용기준 상 채용결격사유 >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ㅇ 18세 이상인 자로 공고일 기준 인사관리 규정상 정년(60세)에 도달하지 않은 자

ㅇ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나.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table>
<tr><th>채용분야 구분</th><th colspan="2">응시자격(요건)</th></tr>
<tr><td rowspan="5">연구원 라급
(공무직)</td><td colspan="2">○ 학예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석사 취득자 및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 고고학, 미술사학, 문화유산학, 박물관학, 보존과학 등
※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임용예정일까지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td></tr>
<tr><td colspan="2">우대사항</td></tr>
<tr><td>경 력</td><td>○ 박물관 업무 경력 1년 이상
〈경력의 범위〉
•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및 발행기관의 관인 및 담당자 성명, 연락처 기재 필수
• 주 40시간 전임근무가 아닌 시간제로 근무한 경우 주당 근무시간을 기재하여야 함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 인정
* (예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인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최종 2년으로 인정</td></tr>
<tr><td>학예사
자격증</td><td>○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 준학예사 이상(3급·2급·1급 정학예사 포함)
※ 자격등급과 관계없이 가점은 1회만 부여</td></tr>
<tr><td>교육관련
자 격 증</td><td>○ 교육관련 자격증
– 교원자격증 2급 이상(1급 포함)
– 평생교육사 3급 이상(2급 및 1급 포함)
– 문화예술교육사 2급 이상(1급 포함)

※ 자격 종류 및 등급과 관계없이 가점은 1회만 부여하며, 위 3가지 외에 교육관련 다른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td></tr>
</table>

※ 우대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
※ 경력은 해당 우대사항에 제시된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가 명시되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
※ 응시자 제출서류는 증빙서류 검증 과정에서 필요시 일부 추가 요구 등 변동 가능
※ 우대사항은 각 항목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상한선을 넘지 못함

다. 가점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중복 가점 불가

구분		부가 점수
법정 가점	「국가유공자법」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 별 만점의 5~10%
사회 형평 가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	서류전형 만점의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 가점은 모두 가산하되, 가점 항목별로 중복 가점은 불가함(동일 항목에서 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가점만을 적용함). 또한, 가산점수의 합계는 전형단계별 만점의 13%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정가점은 채용분야의 채용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함. 단, 법정가점은 취업지원대상자의 구분채용인 경우에는 채용예정인원과 관계없이 적용함

4.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6. 11. 20.(금)~11. 27.(금), 8일간	국가유산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누리집 등 공고
응시원서 접수	2026. 11. 23.(월)~11. 27.(금)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일정 공고	2026. 12. 8.(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면접시험 예정일	2026. 12. 10.(목)	세부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12. 17.(목)	국가유산청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채용 예정자 서류 접수	2026. 12. 17.(목)~ 2026. 12. 31.(목)	응시자격 · 우대사항 등 제출서류에 대한 증빙자료 확인
채용 예정일	2027. 1. 1.(금)	채용 예정자 신원조회 등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5. 채용방법 [서류전형 + 면접전형]

1). 서류전형

○ **(평가방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소극적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사항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①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자기소개서 항목당 허용 글자 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③ 기타 ① ~ ②의 사유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의 경우는 탈락처리

- 적극적 서류전형 : 가산점수를 제외한 평가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중 서류전형 평가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응시인원별 심사방식)**

응시자 수	서류전형 방식	비고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이하	소극적 서류전형	응시요건 적격여부로 판단 ※ 가산점 부여 없음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	적극적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의 5배수로 면접대상자 결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모두 합격 처리(합격자 배수 초과 가능)

2).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 수행능력 및 경력사항의 적합성 등을 검정

○ 평정요소를 상(10점), 중(6점), 하(2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면접전형 평정요소>

① 근로자로서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전형 점수에 가산점수를 합산한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 의 개수 순 > '상' 의 개수가 같은 경우 '중' 의 개수 순)

※ 불합격 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했을 때

○ 동점자 처리 기준

-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사회형평적 채용 대상자 > 서류전형 성적 순으로 결정

※ 상기 기준으로도 합격자 결정이 어려운 경우 채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합격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면접시험 당일 불참 또는 지각 시 면접대상에서 제외

3).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최종합격자	예비합격자(운영기한)	비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박물관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라급)	1명	3명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예비합격자 3배수

- ㅇ 최종합격자 발표 전 최종합격 예정자의 응시자격·우대사항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 결과 합격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합격 또는 임용 취소

- ㅇ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사 등 결격사유 발생 또는 채용계약 체결 후 중도 퇴사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
- ㅇ 예비합격자 임용 유효기한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상단의 표와 같이 정함 (단, 해당 분야의 차기 채용 공고 시 그 공고일 전까지 운영)

4). 재공고 사항

-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 ㅇ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응시자 전원 불합격) 재공고

6.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시간: 2026. 11. 23.(월) 09:00 ~ 11. 27.(금) 18:00**

*** 중식시간(11:3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 ㅇ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E-mail)으로 접수**
  - 우편접수의 경우에는 겉봉투에 **“채용 응시원서 재중”** 표기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빠른 등기)에 한해 접수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전자우편(E-mail)**의 경우 접수기간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을 통한 원서는 접수하지 않음.

- ㅇ 접 수 처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 채용담당자 앞
  - 충남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367,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 / (우)33115 / (041-830-4789)

- ㅇ 전자우편(E-mail) 접수 : caeer@knuh.ac.kr
  - 제출서류 일체를 컬러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제목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 연구원(학예분야)(공무직근로자) 응시원서 OOO(성명)” 표기

※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7. 제출서류 안내

※ 모든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희망할 경우 반환 가능

<table>
<tr><th>제출시기</th><th>제출서류</th></tr>
<tr><td>원서접수 시</td><td>
<table>
<tr><th>구분</th><th>제출서류</th></tr>
<tr><td>공통
(필수)</td><td>①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② 응시원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④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⑤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⑥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⑦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⑧ 공정채용확인서 1부
⑨ 임용요건 학위 증명서 혹은 취득예정 증명서 1부</td></tr>
<tr><td>우대사항
대상자</td><td>- (근무경력) 경력(재직)증명서 1부
- (자격증) 자격증 사본 각 1부</td></tr>
<tr><td>가점
대상자</td><td>-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1부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td></tr>
</table>
</td></tr>
<tr><td>최종합격자
발표 후</td><td>–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 구체적인 최종합격자 제출 서류는 발표 후 별도 안내 예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희망자에 한함)</td></tr>
</table>

8. 유의사항 안내

1). 채용서류 반환 관련

ㅇ「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2026. 12. 31.(목) ~ 2027. 2. 1.(월)

※ 다만, 채용절차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ㅇ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단, 인사감사 등 채용 절차의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자우편주소에 관한 정보는 지원자의 사전동의를 받아 보관

2). 채용비리 관련

ㅇ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을 해지

ㅇ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정합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을 내용으로 하는 확인서(공정채용 확인서)를 제출

ㅇ 채용비리 피해자 발생 시 공정채용기준 제26조(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에 따른 피해자 구제 조치 실시

3). 기타 유의사항

ㅇ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기재 시 블라인드 처리 및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사지원서 기재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발표 등 시험과 관련된 사항의 미확인,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합격 또는 합격 취소(전형 응시 불가)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지원서 기재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음

ㅇ 해당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허위기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 활용되며, 심사에 불필요한 자료는 시험위원에게 일절 제공되지 않음

ㅇ 응시원서에 기재한 연락처(휴대전화, 이메일 등), 생년월일 등은 블라인드 처리하여 시험위원에게 제공됨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결격사유 조회, 신체검사 결과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사지원서 등 일체서류는 접수 마감기한(2026. 11. 27.(금) 18시)까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만 인정

○ 매 채용 전형 참여시 **신분증 원본* 지참 (미지참 시 응시 불가)**

※ 기간만료 전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 포함, 유효기간 내)

○ 본 채용공고는 기관 사정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변경 및 안내 예정

○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박물관 (☎041-830-4789)에게 문의

붙임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
2. 응시원서 1부
3. 입사지원서 1부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7.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10. 공정채용확인서 1부
11.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1부. 끝.

[붙임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성 명	응시 분야
	연구원 라급(공무직)

▣ 작성목록(총괄표)

* 내용을 작성·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작성 여부 란에 "○" 표시

목록	작성 여부
1.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필수)	
2. 응시원서 (필수)	
3. 입사지원서 (필수)	
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필수)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필수)	
7.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필수)	
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필수)	
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필수)	
10. 공정채용확인서 (필수)	
11. 임용요건 학위 증명서 및 취득예정 증명서 (필수)	
12. (우대사항)경력(재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13. 교육관련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4. 학예사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15. 가점사항 증빙서류 (해당자에 한함)	
16.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해당자에 한함)	

※ (등기우편) 아래 목록 번호 순으로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클립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 (전자우편) 아래 목록 번호 순으로 컬러 스캔 후 1개의 PDF 파일로 제출

[붙임2]

응 시 원 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에서 실시하는 연구원 라급(공무직)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시험합격을 무효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 접 수 번 호			응시분야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 라급)*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한자				
주 소					
전 화 (휴대전화)					

※ 응시원서 작성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응 시 표 < 공무직 근로자(연구원 라급) 채용시험 >					사진부착 불요함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 응 시 번 호			응시분야		
2026년 월 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인)					

※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 요령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의 자필 또는 워드(서명은 반드시 자필서명)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됩니다.

1. 응시분야: 채용예정 분야를 정확하게 기재
2. 성　　명: 한자(漢字)는 정자로 기재
3. 생년월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
4. 주　　소: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편번호도 함께 기재
5. 연 락 처: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하며 일반전화는 지역번호도 기재
6. 제출서류는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순서대로 하여 제출
   (모든 서류는 스테플러, 바인더, 클립 등 편철·제본 등 하지 말 것)

「※」표시란은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붙임3]

입사지원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연구원 라급(공무직)		응시번호	< 담당자 기재 >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생일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생년은 미기재			
주소	< 심사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가점 사항 여부	□ 장애인, □ 저소득층, □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다문화가족			
	구분	내용		증명번호(등록번호)

2. 응시자격(채용계획에서 정한 응시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학위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일	학위종류
	000학	0000. 00. 00.	000학 석사

3. 우대사항(해당되는 우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					
경력	근무기관	근무기간	주당근무시간 (비상근의 경우)	직 위	담당업무
	000 연구소	0000. 00. 00. ~	40시간		
자격증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일		자격 검정기관	
	준학예사	0000. 00. 00.			
	평생교육사	0000. 00. 00.			

※ 경력란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사항만을 기재하며 주당근무시간은 비상근의 경우 또는1주 평균 40시간 미만일 경우만 작성 하며,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 가능(워드로 작성)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 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담당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력사항만 기재 바랍니다.**

※ 경력은 '응시 자격 및 우대사항 - 우대사항'에 제시된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재직)증명서 제출 건만 인정됩니다.

※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행기관의 관인·담당자 성명·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이 불명확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본인은 (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만일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채용이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4]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유의사항)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학교명, 가족관계(학력, 지위, 재산) 등의 사항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서 수집·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직·간접적으로 기재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성장과정, 관심분야, 근무경력 관련 등
(직무수행계획서) 공고문의 담당직무 참조하여 업무(사업)목표, 추진전략 등

2026. . .

작성자 (인/서명)

【작성요령】

- A4용지 2쪽 이내로 하고, 워드 혹은 아래한글을 사용하여 작성, 글씨크기 12, 줄 간격 150%, 용지 좌우 상하 여백은 각각 25mm, 머리말, 꼬리말은 각각 10mm로 작성

[붙임5]

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근로자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필수]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국적,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은행, 계좌번호, 전자우편주소, 학력, 학위, 수상실적, 경력·재직사항, 가족사항, 차량번호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급여지급, 각종 제증명 발급 등 근로자 인사·복무 기록관리, 인사감사 등 채용절차의 사후관리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유공자정보, 장애정보, 북한이탈주민정보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유지, 법적사무처리	근로관계 종료 후 3년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필수]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 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합니다.

(1) 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개인정보(자격증·경력·학위) 확인기관	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우대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위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연구원 라급(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7]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 · 파면 · 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26년 월 일

생년월일 . . .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붙임8]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무과 박물관 공무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정채용기준 제23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예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9]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10]

공 정 채 용 확 인 서

성 명	
생 년 월 일	
연 락 처	
주 소	

상기 본인은 우리 기관에 채용 시 본인 혹은 타인에 의하여 부당·위법한 방식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또는 근로계약의 해지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수용하고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동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붙임1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담당자 기재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